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.

발 의 자 : 윤재옥 · 이인선 · 김기웅
이주영 · 권영진 · 최은석
이종배 · 김승수 · 박충권
김정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,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.

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(중전 사전환경성 검토)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,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.

이에,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중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항).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 중 “제13조에 따른”을 “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,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) ① ~ ③ (생 략)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 1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 의 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8 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 를 포함하며, 제9조에 따른 보 안관리 등을 위하여 「환경영 향평가법」 제13조에 따른 주 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) 2. (생 략) ⑤ (생 략)	제8조(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평가 항목 · 범위 등의 결정,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의 작성 및 ----- -- 2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